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 6. 21 선고 2016가단10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7. 5. 31.

판결 선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91. 3. 11. 접수 제2451호로 마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71. 4. 7. 접수 제243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C(1982. 12. 7. 사망)과 망 D(1990. 12. 1. 사망)의 자녀들로는 E, F, 원고, G, 피고, H이 있는데, H은 1981. 10. 17.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있다가, 1991. 3. 11. 피고 앞으로 1982.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리고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71.4. 7. 접수 제2436호로 197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를 제외한 망 C의 다른 상속인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부동산 중 3/4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1971. 4. 7. 접수 제2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도 말소를 구하나, 말소를 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불분명하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참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불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1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최초 인감신고일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1994. 5. 9.이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명의 위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원고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이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없었거나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불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감증명법에 의하면, 인감대장은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0조), 1974년 시행되던 인감증명법(1977. 12. 31. 법률 제3040호로 개정되기 전 것)은 증명청이 인감대장을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고(법 제2조, 제10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소를 이전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자의 인감대장을 신 증명청에 이송하도록(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하고 있었으나, 1977. 12. 31. 법개정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소정 양식에 의해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통합·관리하도록 변경하고(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개정법에

따라 인감을 재신고하되 재신고기간 내에 재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법부칙 제2조) 규정하였다. 그 후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다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통합·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을 분리하여 이를 별도 관리하도록 1991. 1. 14. 법률 제4315호로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 법 제4조 제2항이 삭제되었고, 그 후 1997.12. 17. 법률 제5460호 및 2002. 3. 25. 법률 제6667호의 개정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인감대장을 인감 파일로 보존·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최초 인감신고일이라고 주장하는 위 1994. 5. 9.은 인감대장을 주민등록표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함에 따라 인감대장 도입 후 인감을 재신고한 날짜를 의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 법원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1. 3. 11. 당시 원고의 인감대장이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상속인 망 C이 1982. 12. 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9. 1.에 이르러서야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별지1

부 동 산 목 록

1. 전남 장흥군 J 전 1170㎡
1. 전남 장흥군 K 전 982㎡
1. 전남 장흥군 L 답 298㎡
1. 전남 장흥군 M 전 3002㎡
1. 전남 장흥군 N 전 3002㎡
1. 전남 장흥군 O 전 3002㎡. 끝.

별지2

부 동 산 목 록

1. 전남 장흥군 P 임야 3정3단7무보(33363㎡). 끝.